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교육위원회 가. ~ 다. (생략) <u><신설></u> 라. (생략) 3. · 4. (생략) ② (생략)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구청장 비서실 소관에 관한 사항</u> 마. (현행 라목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

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법 제1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사. 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회의규칙과 의회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사. 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